3. 住宅建設促進法 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491號 1991. 8. 24

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▶

국민주택의 전매·전대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.